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75

발의연월일: 2024. 6. 13.

발 의 자:이종배·성일종·안철수

서천호 · 송석준 · 엄태영

김승수 · 김성원 · 권성동

이종욱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경로당 운영지원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고를 보조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고 있음. 다만,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 가 보조할 수 있음.

그런데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외에 부식 구입비나 취사용 연료비 등 취사에 필요한 비용이 다수 있으나 해당 비용들은 국가가 보조할 수 없음에 따라, 지방자치단체별로 경로당의 급식 제공에 편차가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, 국가가 부식의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국가 보조금을 경로당이 자체 노력으로 절감하였을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양곡 구입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급식 관련 예산 운용에 효율을 기하도

록 하려는 것임(안 제37조의2).

법률 제 호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2제1항 중 "양곡(「양곡관리법」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)구입비의"를 "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"로 하고, 같은 항에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에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양곡(「양곡관리법」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) 및 부식 (副食) 구입비
- 2. 냉난방 비용
- 3. 취사용 연료비
- ③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본문과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제3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경로당(경로당을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이 자체 노력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절감하여 교부된 보조금이 결산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경로당이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이 확정된 회계연도에 한하여 제1항 각 호의 비용 중 다른 비용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37조의2(경로당에 대한 양곡구 제37조의2(경로당에 대한 양곡구 입비 등의 보조) ① 국가 또는 입비 등의 보조) ① -----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(「양 -----다음 각 곡관리법 | 에 따른 정부관리양 |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-----곡을 포함한다)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1. 양곡(「양곡관리법」에 따른 <신 설>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) 및 부식(副食) 구입비 <신 설> 2. 냉난방 비용 <신 설> 3. 취사용 연료비 <u><삭</u> 제>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 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③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<신 설> 률」 제22조제1항 및 제31조제 2항 본문과 「지방자치단체 보 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 조 및 제31조제2항 본문에도

불구하고 경로당(경로당을 운

영하는 주체를 말한다. 이하 이

항에서 같다)이 자체 노력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비용을 절감하여 교부된 보조금이 결산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경로당이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이 확정된 회계연도에 한하여 제1항각 호의 비용 중 다른 비용에이를 사용할 수 있다.